



제 50 호

식품의약품안전처

(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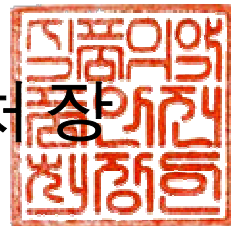
국외시험·검사기관 지정서

- 기관 명칭 :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., Ltd. (OMIC BANGKOK)
소재지 : 12-14 Yen Akas Soi 3, Yen Akas Rd, Chongnonsri, Yannawa, Bangkok 10120, Thailand
대표자 : Pattarawan Vannacharoen
서명권자 : Pattarawan Vannacharoen, Kritsana Sirirattana, Akira Morimoto
시험·검사 대상 품목 : 농·임·수산물,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
시험·검사 항목 :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
유효기간 : 2024.6.12. ~ 2028.6.11. (최초 지정일 : 2005. 4. 08.)

위 기관을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4 년 6월 1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<국외시험 · 검사기관 준수사항>

1. 국외시험 · 검사기관은 「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 · 검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나,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합니다.
2. 국외시험 ·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- 가. 판정이 모호한 시험 ·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 시험 ·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
 - 나.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품, 시약 또는 배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. 다만, 유효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 - 다. 의뢰된 시험 · 검사 항목이나 해당 시료에 대한 기준 · 규격을 시험 · 검사할 때 그 시험 · 검사 항목을 빠뜨리거나 다른 항목의 기준 · 규격을 적용하는 행위
3. 국외시험 · 검사기관은 시험 · 검사성적서, 시험 · 검사일지 등의 문서(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)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4. 국외시험 · 검사기관은 매년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시험 · 검사성적서를 발행한 전년도 실적
 - 나. 해당 시험 · 검사기관의 정부가 시험 · 검사능력을 평가한 자료 또는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시험 ·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자료